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을 위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근거 신설〉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07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을 위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21호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여기구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1. 16.

다. 회 부 일 : 2026. 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제2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여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을 위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21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u>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수익 허용</u>

현행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가액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하 생략)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u>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u>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또한,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면서,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¹⁾.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

따라서 개별법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이에 개정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6106호) 제10조에 따라,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²⁾ 또는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참고로, 유엔해양총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의 이행을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분야 최대 규모의 고위급 국제회의로³⁾, 대한민국은 2028년 6월에 개최될 제4차 유엔해양총회 개최국으로 확정되었으며, 개최 도시는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임.

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2)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특별법안」은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동 회의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등 제반 회의를 “유엔해양총회등”으로 정의하고,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3) “제4차 유엔(UN)해양총회 2028년 6월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 2025.12.10.

[유엔해양총회 개최현황]

회차	개최국	개최지 / 개최일시
1차	스웨덴·피지	유엔 본부 / '17.6.5.~10.
2차	포르투갈·케냐	케냐 나이로비 / '18.11.26.~28. 포르투갈 리스본 / '22.6.27.~7.1* * '20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연기
3차	프랑스·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산호세 / '24.6.7.~8. 프랑스 니스 / '25.6.9.~13.
4차	대한민국·칠레	개최예정

자료: 해양수산부

주: 유엔해양총회는 관례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공동개최하며, 본행사 전년도에 개발도상국에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선진국에서 본행사를 개최함

한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4)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 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방지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국유재산특례 신설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특례 목적의 공익성)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과 개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특례 목적의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특례 인정의 효과성) 국유재산 사용료등을 면제함으로써 총회 준비 및 개최 과정에서 준비기획단과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임차료 등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준비기획단 또는 개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사업 조성, 인근 도시경관 조성,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⁵⁾, 별도의 특례를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5)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제8조(국가 등의 지원) ①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엔해양총회등 기반사업 조성
2. 유엔해양총회등 회의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3. 유엔해양총회등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4.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등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특례요건의 명확성·구체성)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국유재산특례의 요건을 ‘준비기획단 또는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임.

(존속기한의 적절성)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6년 5월 31일로 하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있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⁶⁾과 유엔 해양총회 준비 및 사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존속기한은 적정하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인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제2216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재정경제부는 정부가 국제행사 중 박람회를 제외하고는 APEC 등 타 국제행사에 국유재산특례를 인정한 경우가 없고, 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을 엄격히 준수 중으로 지자체 운영과 활동 지원은 곤란하며, 제정안에 준비단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명시되어 있어 추가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제2216106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엔해양총회등”이란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동 회의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등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7조(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 ①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운영
3.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준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4.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연구·자료수집 등 지원
8. 유엔해양총회등의 사후 정리·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준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으로 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u><신 설></u>	연 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221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제 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문 의 처

02)6788-5160